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46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이개호・이기헌・어기구

김영배 · 위성곤 · 서영교

김현정 • 이정문 • 문금주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.

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73%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, 재정난 등 운영상의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하지만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함에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

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 하는 상황임.

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%는 2003년 7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,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%만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.

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,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등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.

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3조의3(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의 설치·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 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 신청서에 잔여 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

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있다. 다만,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, 잔여재산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,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,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4(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) ①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"어린이집 운영 법인"이라 한다)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
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 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어린이집 건물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재산처분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
- 2.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의 충족을 위한 증·개축 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7조에 따른 정관 변경 및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 용도변경·매각 등 재산처분 허가 등 목적사업 변경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상 인허가 신청에 대한 우선적 처리
-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임대
- 5.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경영·재무 등 컨설팅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④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.
- ⑤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	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
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	
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직	
원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	
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	
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	
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・	
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	
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	
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	
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	
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
	별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
	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
	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이
	나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비
	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43조의3(해산 및 잔여재산 귀
	속에 관한 특례) ① 어린이집
	의 설치・운영만을 목적으로
	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

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·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 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 신청 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 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인가신청 당시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보육사업에 직접사용되었던 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은 그

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 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, 잔여재산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한다.

- ⑥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,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, 제4항에 따른 재산 매입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.
- 7 제6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정비심사위원회의 구 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

<신 설>

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43조의4(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"어린이집 운영 법인"이라한다)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 영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필요한 행정적・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어린이집 건물이 「보조금

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

- 1항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 다른 목적사업으로 사용 하는 형태의 재산처분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
- 2.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적합

 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의 충족

 을 위한 증・개축 비용 등의

 보조 또는 융자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7조 에 따른 정관 변경 및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 용도변경・ 매각 등 재산처분 허가 등 목 적사업 변경을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상 인허가 신청에 대한 우선적 처리
- 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 의2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 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임대
- 5. 전환하려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경영·재무등 컨설팅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
- ④
 제1항에
 따른
 목적사업의

 변경
 또는
 추가
 및
 제3항에
 따

 른
 행정적・재정적
 지원에
 관

 한
 사항은
 보육정책위원회의

 심사를
 거쳐야
 한다.
- ⑤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법 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